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임오경·신영대·한병도

진선미 • 서영교 • 이연희

민병덕・박 정・박선원

김동아 · 김윤덕 · 한정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.

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·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대한민국 영화계는 이 기금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·제작 진흥 관련 지원,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,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, 소 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 하여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는바, 이 같은 조치는 한 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.

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"를 "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5조의2(부과금의 징수) ① 영 | 제25조의2(부과금의 징수) ① | | |
| 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 | | | |
| 전 및 영화・비디오물산업의 | | | |
|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(비 | | | |
| 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. 이하 | | | |
| 이 조에서 같다)에 입장하는 | | | |
|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 | | | |
| 의 <u>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</u> | <u>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</u> | | |
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|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| | |
| <u>징수할 수 있다</u> . 다만, 다음 각 | <u>금으로 징수한다</u> | | |
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 | | | |
| 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| | | |
|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|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② ~ ⑦ (생 략) |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| | |